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26일,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진열·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현행법 제21조제2항¹⁾은 불법 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1) 「농약관리법」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미등록 농약의 단순 광고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판매” 행위가 아니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을 차단하기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존재함.

또한, 온라인 판매업자를 단속하여 고발하는 경우에도, 실제 “판매 실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가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농약이 광고를 통해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까지 이어져 농약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특히 해외직구 플랫폼이나 유튜브 등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농약의 판매 알선 및 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 불법농약 온라인 판매사이트 조치 현황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국내사이트 삭제	-	222	752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요청 / 차단)	31 / 24	543 / 471	783 / 40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불법 농약과 같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급성 중독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유통 시 농업인을 심각한 건강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등록된 농약은 토양 및 수질 잔류성, 생태 독성 등을 등록과정에서 평가받는 반면, 불법 농약은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으로 토양과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음.

또한, 불법 농약의 잔류물이 농산물에 남아 식품 공급망으로 유입될 경우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이 불법 농약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최종소비자까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사 입법례인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판매 알선’ 또는 ‘광고’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 「약사법」 】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불법 농약’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및 최종소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불법 농약이 「약사법」상 ‘위조 의약품 등’과 국민건강 전반에 미치는 위험과 심각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 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과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피해 등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현행법상 입법 미비를 해소하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약등”을 “제1항의 농약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호의5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u>같은 조</u> 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7. 제22조제1항을----- ----- <u>같은 조</u> <u>제3항</u> ----- ----- --
8. ~ 15. (생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생략) <u><신 설></u>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

② <u>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u> 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4. (생략) 1의5. <u>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u> <u><신설></u> 2. 3. (생략)	<u>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제1항의 농약등</u>----- ----- -----. 제33조(벌칙) ----- ----- ----- -----.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u>제22조제1항을</u> ----- ----- 1의6. <u>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u> 2. 3. (현행과 같음)
--	---